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인 ‘대출액’ 에서 세금 제외 등〉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431호)

2025. 11.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1.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인 ‘매출액’에서 세금·부담금 제외	2
2. 정부 세입과 관련된 가맹점수수료 부담분 정부 보조	9
3.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 설립 및 협의요청권 부여	1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5. 7. 11.
3. 회 부 일 : 2025. 7.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우대수수료를 적용기준인 ‘매출액’에서 세금·부담금 제외

-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를 적용기준인 ‘매출액’ 산정 시에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되, 그 밖의 국세·지방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3항).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생략)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u>규모</u>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 ----- <u>규모</u> (매출액 산정시 국세·지방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금은 제외하 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 가치세는 포함하여 산정한다)----- ----- -----.

- 현행법령은 부당한 가맹점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적격비용¹⁾만을 반영해 가맹점수수료율을 산정하도록 하되²⁾,

1) “적격비용”은 자금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거래승인·매입정산 등 비용, 마케팅비용, 일반관리비, 조정비용으로 구성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 별표4).

2)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용카드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이하 “적격 비용”이라 한다)만을 가맹점수수료율 산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이 제공받는 서비스와 관련 없는 비용을 가맹점이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는 협상력 부족 등을 고려해 적격비용과 관계없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으며,³⁾ 우대수수료율 적용기준인 ‘매출액’은 신용카드가맹점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과세표준(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 등⁴⁾을 말함.

<우대수수료율(「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제1항)>

구분	연간 매출액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영세가맹점	3억원 이하	0.4%
중소가맹점	3 ~ 5억원	1.0%
	5 ~ 10억원	1.15%
	10 ~ 30억원	1.45%

※ 연간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가맹점은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해 업계 자율상한(2.3%) 범위에서 수수료율을 책정함.

(자료: 금융위원회)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기준)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란 연간 매출액(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며, 개인 또는 법인이 둘 이상의 신용카드가맹점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0억원 이하인 개인 또는 법인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6(우대수수료율) ① 법 제18조의3제3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수수료율을 말한다.

1.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가맹점 : 0.4 이하
2. 연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고 5억원 이하인 가맹점 : 1.0 이하
3. 연간 매출액이 5억원을 초과하고 1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15 이하
4. 연간 매출액이 10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1.45 이하

4)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5

□ 그런데, 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을 선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담배, 유류, 주류 등 세금·부담금 비중이 높은 품목⁵⁾을 주로 판매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실질 수익과 관련 없음에도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적용을 받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라고 하는데, 판매되는 상품·용역에는 대부분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가 상품·용역 구매 시에 그 가격에 포함된 세금을 부담하면, 해당 상품·용역을 판매한 사업자가 이를 대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됨.

□ 개정안은 현행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를 적용기준인 ‘매출액’을 세금·부담금을 제외한 ‘실질 수익’으로 변경함으로써 매출액 대비 실질 수익이 낮은 신용카드가맹점이 우대수수료를 적용대상에 포함되거나 보다 낮은 가맹점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세금·부담금 비율이 높은 품목을 주로 판매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매출액과 실질 수익의 연계성이 낮고, 국가 및 지방자치

5) 담배(유통)의 경우, 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엽연초부담금이 적용되어, 판매가격(4,500원) 중 세금·부담금의 비율이 73% 수준으로 나타남.

단체의 세금·부담금 징수업무를 지원함에도 오히려 더 많은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하게 되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타당한 면이 있음.

□ 다만,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첫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신용카드업자의 가맹점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

신용카드업자는 세금·부담금이 포함된 ‘매출액’ 전체에 대한 자금을 조달해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에 따라 ‘매출전표가 접수된 날부터 2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가맹점에 신용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여전히 전체 매출액 기준의 자금조달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점,

2012년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가 도입⁶⁾된 이후 3년 단위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연 매출 2억원 이하 → 연 매출 30억원 이하)하고, 그 가맹점수수료율도 지속 인하(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1.5% → 0.4%)하였다는 점,

6) 2012년 이전에는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기반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신용카드업자의 협상을 통해 수수료율을 책정하였음.

< 영세·중소가맹점 추이 (괄호)는 체크카드 >

구 분		2013~ 2015년	2016~ 2018년	2019~ 2021년	2022~ 2024년	2025년~	
연 매 출	2억원이하	1.5%(1.0%)	0.8%(0.5%)	0.8%(0.5%)	0.5%(0.25%)	0.4%(0.15%)	영 세
	2~3억원	일반	1.3%(1.0%)			1.0%(0.75%)	중 소
	3~5억원		일반	1.3%(1.0%)	1.1%(0.85%)		
	5~10억원			1.4%(1.1%)	1.25%(1.0%)	1.15%(0.9%)	
	10~30억원			1.6%(1.3%)	1.5%(1.25%)	1.45%(1.15%)	
	30억원~			일반			

(자료: 금융위원회)

주유소 등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7)에 따른 특수가맹점에 해당되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수수료율을 감액 적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신용카드업자의 부담 적정성 등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어 보임.

- 7)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가맹점수수료율 산정시 준수사항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 비용은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경우와 관련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해당 가맹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다.

<별표 5>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받으면서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 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정·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 특수가맹점 >

구분		신용카드 수수료율
주유소·충전소	주유소, LPG충전소, LPG석유판매점 등	1.5%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철도, 여객선 운영사	1.5%
전기요금	한국전력	1.0%(고압)/1.3%(일반)
도시가스요금	서울도시가스, 부산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등	건당 120 ~ 150원
통행료	한국도로공사, 남산터널 등	1.5%

(자료: 금융위원회)

□ 둘째, 개정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용카드업자가 개별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중 세금·부담금의 규모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의 품목에 대해 국세,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이 복합적으로 부과되는 상황⁸⁾을 고려할 때, 관련 세금·부담금 내역 확인을 위한 행정적 부담이 상당할 수 있고,

관련 내역을 확인해 주어야 하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부담금관리주체 역시 동일한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①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까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것은 2019년부터인데, 2018년 수수료 개편 논의 시에 사업자별 세금·부담금 납부금액 확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종전 기준 ‘매출액 5억원’을 ‘매출액 30억원’으로 확대했으며,

②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및 각 부담금관리주체의 사업자별 세금·부담금 납부액 확인 절차가 선행되지 못할 경우 물리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할 수 있고,

③ 연 매출 1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8) 담배(퀵런)의 경우에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지방세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부담금인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염연초부담금 등이, 휘발유의 경우에는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관세, 지방세인 주행세, 부담금인 수입부과금·판매부과금 등이 부과됨.

다른 신용카드매출액 세액공제⁹⁾ 효과를 고려할 때 오히려 순환금 (0.4~1.15% 가맹점수수료율 + △1.3% 공제)이 발생하는 등 실수수료 부담이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임.

< 신용카드매출세액 공제 포함 실제 가맹점 부담 >

연매출액	가맹점 수수료율	연수수료 (만원)(A)	매출세액공제 대상(만원)(B)		가맹점 부담효과	
			1.3%	공제한도	연부담액 (B-A)	실질 수수료율
3억원 이하	0.4%	120	390	1,000	△270	△0.9%
3~5억원	1.0%	300~500	390~650	1,000	△90~△150	△0.3%
5~10억원	1.15%	575~1,115	650~1,300	1,000	△75~115	△0.15%~0.115%

※ 매출이 모두 신용카드로 발생함을 가정

(자료: 금융위원회)

□ 주요 이해관계자인 여신전문금융협회는 이미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95.7% 수준에 이르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판매부문의 적자를 카드론 등 대출수익으로 만회하는 상황이므로, 동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신용판매부문의 적자가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9) 「부가가치세법」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1. 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

나. 제3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

2. (생략)

3. 공제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하되,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퍼센트(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

2. 정부 세입과 관련된 가맹점수수료 부담분 정부 보조

- 개정안은 신용카드가맹점의 판매대금 중 국세, 부담금 등 정부 세입항목에 대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6(일부 조세에 대한 수수료 지원) ① 신용카드가맹점이 판매대금 중 유류세 등 정부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부담한 가맹점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범위 및 보조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안은 연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신용카드가맹점이 국세, 부담금 등 정부 세입항목에 대해 부담한 가맹점수수료를 정부가 보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납세·징수행정 협조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부가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면이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별 국세 및 부담금 납부금액 확인을 위한 국세청 및 각 부담금관리주체의 행정적 부담과 가맹점수수료 보조를 위한 정부의 재정 여건 등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3.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 설립 및 협의요청권 부여

□ 개정안은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게 하고, 이 단체가 가맹점수수료를 결정과 관련해 신용카드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u><신설></u>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 <u>매출규모, 특수 업종 등</u> ----- ----- ----- ----- ----- ----- ----- 제18조의5(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의 수수료 협의 요청) 제18조의2에 따른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는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 현행법 제18조의2¹⁰⁾ 및 시행령 제6조의12¹¹⁾에 따라 연 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업자와의 가

- 10)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가맹점 단체 설립 등) ①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가맹점수수료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계약을 체결·유지하기 위하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 11)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2(가맹점 단체 설립 기준)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연간 매출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2.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하일 것

맹점수수료를 협상 등을 위해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규모 가맹점 외에 ‘특수 업종’ 가맹점의 경우에도 가맹점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 업종 가맹점의 수수료율 결정과 관련된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취지로서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2010년에 신설된 현행법 제18조의2는 당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중소가맹점 보다 낮은 상황에서 소규모 가맹점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것이나,

2012년 도입된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은 금융위원회가 직접 결정하므로¹²⁾,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상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

□ 한편, 개정안은 ‘특수 업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만약,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수용하는 경우라면, 그 적용 대상을 명확히 정할 필요성이 있음.

1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3(가맹점수수료율의 차별금지 등) ①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① 이미 여러 업종별 단체¹³⁾가 금융위원회의 우대수수료율(연 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적용) 개편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있고, ②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에도 신용카드업자가 개별 가맹점 또는 소속단체¹⁴⁾와 가맹점수수료 협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입법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113

13) 한국주유소협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마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 PG협회, 완성차업계 등